

2025년 화성예술의전당 하우스 운영인력 채용
최종합격자 공고

2025년 화성예술의전당 하우스 운영인력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2025. 9. 29.

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

1. 최종합격자 명단

채용분야	연번	응시번호	휴대전화 뒤 4자리
하우스부매니저	1	2025-101	7703
	2	2025-104	1010
공연장안내원	1	2025-201	5217
	2	2025-204	1335
	3	2025-206	1557
	4	2025-207	9911
	5	2025-208	6804
	6	2025-209	0449
	7	2025-210	1231
	8	2025-212	7570
	9	2025-213	1262
	10	2025-214	3732
	11	2025-215	1861
	12	2025-216	0454
	13	2025-217	4530
	14	2025-218	1622
	15	2025-219	4635
	16	2025-222	0484

2. 예비합격자 명단

채용분야	연번	응시번호	휴대전화 뒤 4자리
하우스부매니저	1	2025-107	7601
	2	2025-103	6641
	3	2025-105	9528

※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

3. 임용후보자 등록

가. 등록기간 : 2025. 9. 29.(월)~10. 1.(수) 18:00 까지

나. 등록장소 : 예술의전당본부 사무실 (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1 자라뫼공원방문자센터)

다. 등록방법 : 방문제출

라. 제출서류 * 첨부 문서를 참조하여 작성 후 제출

- 1) 신분증 사본 1부
- 2) 통장 사본 1부
- 3)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
- 4) 응시자격 결격사유 서약서 1부
- 5) 공정채용 확인서 1부
- 6)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
- 7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- 8) 가점증빙서류 원본 1부(※ 해당자에 한함)
- 9) 경력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원본 1부(※ 해당자에 한함)

마. 임용예정일 * 팀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1) 하우스부매니저: 2025. 10. 23.(목)

2) 공연장 안내원: 2025. 10. 30.(목)

4. 기타사항

가. 최종합격자는 등록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해야 하며, 기일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대상자 등록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임용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방문하지 않을 때에는 근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에서 제외됨

나. 추후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임용에서 제외됨

다. 이의제기 신청

- 1) 채용관련 비리, 부정행위, 소명 등을 위한 채용이의센터를 운영하며,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(합격자 발표일 포함) 이의제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(eunjin@hcf.or.kr)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

- 2) 이의제기 신청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[열린마당-정보공개-기타공개] 게시판 참고

라. 채용서류반환: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 가능하나, 전자우편제출의 경우 비해당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5. 문 의: [재]화성시문화관광재단 예술의전당공연기획팀(031-374-2653)